

축사시설 지원정책과 융자기간 연장 필요성



김 동 균 교수
(상지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사람이

한 치 앞 일을 알 수 없는데 수년 후의 일을 미리 알기를 바란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일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몇 년 후의 미래상을 제시하다가 번번히 예측에 실패한 농정지표를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십년 단위가 바뀔 무렵이면 정부는 거의 의례적으로 그 다음 십년 후의 모습을 제시하곤 하여 왔다. 지금 내 연구실에도 대망의 90년을 맞이하면서 제시한 축산장기발전대책을 비롯하여 새 정부 출범시 설계된 농정개혁추진 방안 등 듣기만 해도 황홀한 청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 자료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의 문제점들이 반복해서 주마등처럼 돌아가고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예측의 부정확함에 새삼 놀라게 된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국내의 예측과 대응방안에 비하여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작용해 오고 있는 것은 외국의 무역개방압력의 추세이다. 오래 전에 예정되었던 대로 금년 7월을 기하여 축산물의 수입은 사실상 전 품목이 개방되었다.

정부도 이 때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배수진을 쳐 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계획과 실적 사이에는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는 양축 농민들의 도산과 이농으로 연결되었다. 이 현상은 정부가 적자생존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규모화 및 전업화 정책을 펴 온 맥락에서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추진하면서 대가축에 대한 전업농 육성책과 돼지 및 닭에 대한 사육시설의 단지화 사업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시설자금으로 투입하였다. 영농능력이 우수하고 참신한 의지를 지닌 양축가들은 이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키워 성공한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산농가의 평균 부채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증가된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자금들이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불황국면과 맞물려 도산농가를 양산시킴에 따라 상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생산기반을 각종 건설사업(도로나 공단)을 진행하면서 폐쇄시키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축산영농후계자로 선정되어 각종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아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본격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할 무렵에 개발로 인한 폐업을 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즉, 양축기반이 개발구역에 편입된 농가중 대부분은 보상주체(기업자)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시지가 수준의 토지보상과 단순 휴업처분(3개월분의

영업이익만 계산) 수준의 영업보상금을 사업정리 보상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유일한 생계수단이던 농장을 헐값에 상실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되 양돈을 비롯한 축산시설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데에 있다.

즉,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가 영농을 해 왔던 당해 지역과 인접 시·군에 이전 의사를 타진하면 거의 대부분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현저히 곤란하다'는 답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농가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미미한 자금으로 철거를 당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생업자금이 긴 커녕 주거마련 비용조차 없는 상태에서 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행정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어서 동정어린 입맛만 다시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가 관련기관과 일개 농민이 당면한 민사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축산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평가절차를 마친 해당 기관에서는 '받고 싶으면 속히 보상금을 수령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므로 축산농가는 울며 겨자먹기로 승복하는 일이 허다한 것으로 듣고 있다.

최근 부채 상환에 직면한 축산농가의 시설자금은 '94년 이전에 지원받은 축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응자를 받은 부분이다. 이 상환조건은 그 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제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구조개선자금 응자혜택은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전업농 비율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농가에서는 매년 강화되어 온 환경규제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투자하였거나 질병방역비의 증가 등으로 생산비가 올라 상환금 여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의 농가에 대하여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즉, 상환시기를 다소 연장하여 주거나 재용자 혜택을 주어 종전의 부채를 대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부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십여년전에 이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고, 유럽 여러나라들도 농가부채를 고민해 왔다. 필자가 목격하였던 북해도 낙농가들의 부채 역시 정부가 주선한 농기계 및 시설 자금이었으며 최근 상환시기에 들어간 우리나라 시설자금도 정부가 주선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다른 형태의 지원책을 세워 농민이 안심하고 상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보인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축산이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의 완전종속을 면하려면 영농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식량정책은 이제 단순한 경제논리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라인이라 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은 우리나라 축산업 기반구축의 핵심적 사안이므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우선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향후 지원대책은 단순한 자금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시설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이른바 '한국형 최적 시설체계'의 정립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자금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후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에서 축산 시설기반이 잠식되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도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강조해 둔다. **養豚**